

2024년도 과학인재육성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: 4억 5천만 원

○ 출연목적

-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육성사업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
- 공공 연구성과 확산,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 연계로 기업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

○ 출연내역 :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식(4억 5천만 원)

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」 ①-③
‘출연 사업계획서’ 참조

○ 기대효과

-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, 특구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과 사업화 성과 창출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나.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: 10억 4백만 원

○ 출연목적

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
-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,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

○ 출연내역 : 총 10억 4백만 원

- R&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식(6억 4백만 원)
-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억 원)
-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억 원)

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」 ②-③-1, ②-③-2, ②-③-3 ‘출연 사업계획서’ 참조

○ 기대효과

-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,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
-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·북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출배경

- 이 출연계획안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계획안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²⁾에 따른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
-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19년에 특구로 지정된 후 2020년부터 매년 출연을 통해 R&D 기술사업화 지원,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
- 특구 중심의 ‘공공기술 발굴·이전 ⇨ 사업화 ⇨ 기업 성장’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, 충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국비 대비 지방비 대응 비율에 따라 2023년 출연금액과 동일하게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,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
1) 지방재정법 [시행 2023. 5. 16.]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3. 9. 22.]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다.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

-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출연계획안은 「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³⁾에 따라 우수 R&D 인력 지원,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신성장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것임
- 특히,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·북부권에 5대 혁신기관 및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‘혁신지원센터’의 운영 및 AI 제조 기반 인프라 구축, 과학기술 확대 보급 등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후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 업무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라. 종합의견

- 이 계획안은 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’과 ‘충북과학기술혁신원’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임
- 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)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대응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음
- (충북과학기술혁신원) R&D인력 인건비 및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고,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3)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시행 2022. 12. 30.] 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